

심 사 보 고 서

○ 충청북도 생활문화 활성화 지원 조례안



충청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심사보고서

충청북도 생활문화 활성화 지원 조례안

충청북도 생활문화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350
----------	-----

2016. 3. 15.(화)
행정문화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자 : 최광옥 의원 등 7명

나. 제출일자 : 2016년 2월 24일

다. 회부일자 : 2016년 2월 24일

라. 상정일자 : 2016년 3월 4일

- 제34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 상정·의결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가결)

2. 제안 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최광옥 의원)

가. 제안사유

○ 생활문화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민의 자발적인 문화 활동을 장려하고 지역의 문화적 가치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생활문화예술의 정의 (안 제2조)

○ 생활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 (안 제3조)

-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한 시책의 수립

- 주민의 생활문화 활동을 위한 도지사의 권장·육성
-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한 사업 (안 제4조)
 - 주민 문화예술단체, 동호회 상호간의 네트워크 촉진
 - 생활문화지원센터 운영,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등

3. 검토보고 요지

- 금번 제정조례안은 생활문화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민의 자발적인 문화 활동을 장려하고 지역의 문화적 가치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 주요내용으로는
 - 안 제2조에서는 생활문화예술에 대한 정의를 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생활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규정함.
- 금번 제정조례안은 생활문화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과 지원을 정함으로써 주민의 자발적인 문화 활동을 장려하고 지역의 문화적 가치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 론 요 지 : “생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 수 의 견 요 지 : “없 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 생활문화 활성화 지원 조례안」

충청북도 생활문화 활성화 지원 조례안

(최광옥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50
----------	-----

발의연월일 : 2016년 2월 24일

발 의 자 : 최광옥, 임희무, 엄재창,
김영주, 연철흙, 윤은희,
임순묵

1. 제정이유

- 생활문화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민의 자발적인 문화 활동을 장려하고 지역의 문화적 가치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생활문화예술의 정의 (안 제2조)
- 생활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 (안 제3조)
 -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한 시책의 수립
 - 주민의 생활문화 활동을 위한 도지사의 권장·육성
-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한 사업 (안 제4조)
 - 주민 문화예술단체, 동호회 상호간의 네트워크 촉진
 - 생활문화지원센터 운영,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등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역문화진흥법」, 「예술인 복지법」
- 나. 관련부서 협의 :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예술과와 협의함.
- 다. 예산조치 : 해당 없음
- 라. 기 타
 - (1) 입법예고 : 2월 15일 ~ 21일(6일간)
 - (2) 규제심사 결과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충청북도 생활문화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 제7조에 따라 생활문화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민의 자발적인 문화 활동을 장려하고 지역의 문화적 가치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문화예술” (이하 “생활문화”라 한다)이란 「예술인 복지법」 제2조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과 그 결과물의 총체를 말한다.
2. “주민 문화예술단체”란 생활문화 활동을 하는 관련자 또는 동호회가 결성한 단체를 말한다.
3. “동호회”란 생활문화 활동을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말한다.

제3조(생활문화의 활성화) 충청북도지사는(이하 “도지사”로 한다)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주민의 생활문화 활동을 권장·육성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 도지사는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주민 문화예술단체, 동호회 상호간의 네트워크 촉진 사업
2. 주민 문화예술단체, 동호회의 문화예술 역량을 높이기 위한 전문인력 지원
3. 주민 생활문화단체, 동호회 활동의 사회적 공헌 기회 마련
4. 주민 문화예술단체, 동호회 활동의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5.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한 지원센터의 운영사업
7. 그 밖에 도지사가 생활문화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보조금의 지원)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생활문화 관련 비영리법인 및 단체의 시·군지역 연합회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준용)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령 발췌

□ 「지역문화진흥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재원의 확보 등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해당 지역문화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는 등 각종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7조(생활문화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민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여 운영하는 문화시설의 운영자는 시설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주민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 활동을 위한 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

③ 개인·기업 등 민간이 설립한 문화시설의 운영자가 주민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에게 활동 공간을 제공할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와 관련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문화시설의 확충에 필요한 지원과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문화시설의 건립·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유휴 공간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문화시설로 용도 변경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생활문화시설을 설립·운영하려는 자가 제3항에 따른 유휴 공간을 사용할 것을 신청하면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예술인"이란 예술 활동을 업(業)으로 하여 국가를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풍요롭게 만드는 데 공헌하는 자로서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분야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창작, 실연(實演),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